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824 발의연월일: 2021. 3. 16.

발 의 자: 한준호 · 임오경 · 이용빈

강민정 · 송재호 · 서동용

기동민 · 김원이 · 홍성국

박홍근 · 오영환 · 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에서 유래한 인수공통감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등 인간과 야생동물 접점에 대한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야생동물 이동전시, 체험 등 무분별한 동물 체험 활동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 중에서도 동물원, 수족관의 보유 동물을 어린이집, 행사장 등으로 이동시켜 전시하는 이동전시 동물원의 경우 대부분 체험 전시 형태로 운영되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상해(할큄 등) 우려가 있으며, 이동 과정에서의 야생동물 운송 스트레스, 적정 서식환경 미확보로 인한 동물복지 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 사전 예방 및 전시 동물의 복지 확 보를 위하여 동물원·수족관 보유 동물을 해당 시설 이외에서 전시하 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16조제2항제8호 신설).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이동전시의 금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동물을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에서 전 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동물원 및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7조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이동전시의 금지)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는 보유 동물을 제3조에 따라
	등록한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
	관 이외에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u>하지 아니하다.</u>
	1. 제3조에 따라 등록한 다른 동
	물원 및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u>경우</u>
	2.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
	적 목적으로서 환경부와 해양
	수산부의 공동부렁으로 정한
	<u>경우</u>
제16조(벌칙) ① (생 략)	제16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7조의2에 따른 행위를 한
	<u> </u>